

1998. 9. 4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근〉

순 서

- ☐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 2
- ☐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7
- ☐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 본 조례안은 98년 8월 17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안사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굴·조사·연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제도화하고,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지도 및 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공동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함.

■ 주요골자

-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으로 조사·연구,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배치 및 교육 훈련 등을 규정 (안 제2조)
-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안 제3조)
-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원 (안 제5조)
- 수탁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 (안 제8, 9조)
- 구청장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 (안 제10, 11조)
- 위탁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안 제12조)

■ 관련근거

- 내무부 지역종합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지침
- 광주광역시 행정13240 - 6 ('97. 1. 15)호 공문
- 사회복지기본법 제26조 (민간인 참여)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 검토의견

○ 자원봉사는 국가나 사회, 이웃을 위하여 어떤 일에 자진해서 무료 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참여자 모두가 스스로 봉사한다는 의식개혁이 있어야 하며,

○ 경제파동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현실, 사회가 안정되고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체계적인 인력수급과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공동 복지에 종합적인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자치단체 7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직영 37개소, 위탁 35개소로 업무의 성격상 점차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례제정은 광주북구, 순천시, 여수시와 대전 유성구로 법인 또는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3조 사무위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법 제31조, 제32조의 법률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이나 사무소의 위치, 목적사업 등은 민법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규정할 사항이지만 위탁운영 시 행정적인 철저한 관리와 규정에 의한 회계 검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 현재까지 자원봉사활동이 교통, 환경, 청소년선도 분야에 집중되고 중·고·대학생들은 학점취득을 위한 일과성 행사에 치중된 경향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 가로변청소나 담배꽂초 줍기, 장애인돕기 등으로 의식이 바뀌질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곳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규 정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민간의 참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정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1.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84. 2. 29>

- ①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하는 사무
-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④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사무

2.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84. 2. 29>

3.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84. 29.>